

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5560
결재일자	2016.2.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담당	어르신복지담당	교육문화복지담당		
남경희	김기란	이만형	02/05 박형중		
협 조					

**「무장애 도시 성북」 만들기  
2016년 장애인 구정참여사업 공모 추진 계획**

2016. 2.

**교육문화복지국  
어르신복지과**

**「무장애 도시 성북」 만들기  
2016년 장애인 구정참여사업 공모 추진 계획**

『무장애 도시 성북』 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 교육지원, 체육활동, 문화·여가, 교통·안전,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 및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**I 관련 근거**

-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2항 (단체의 보호·육성)
- 지방재정법 32조의 2 ~ 제32조의 10
- 지방재정법 시행령 37조의 2 ~ 37조의 6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**II 사업 개요**

공모사업 분야 및 내용

공모사업명	공모사업 사업 분야 (5개 분야)
「무장애 도시 성북」 만들기 (장애인복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 교육 지원</li> <li>- 장애인 체육 활동</li> <li>- 장애인 문화·여가</li> <li>- 장애인 교통·안전</li> <li>-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</li> </ul>

※ 한 단체에서 한 개 분야에 여러개의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

## □ 사업예산

- 34,000 천원 (구비 100%)

## □ 사업추진기간

- 2016년 4월 ~ 12월
- ※ (회계연도 종료일 2016. 12. 31.) 이후는 보조금예산 집행 불가

## □ 보조사업 신청 자격

-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단체
- 주된 사무소가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고, 회원이 성북구민으로 50인 이상인 단체
-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으로 해당단체의 핵심추진사업 위주의 사업
- 단체운영과 사업추진경비는 일부를 자체충당(30%이상)할 수 있는 단체
-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
-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
- 법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영리 공익사업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

### < 지원제외대상 >

- 학술·연구단체·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와 관련된 단체
-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사업 및 단순캠페인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
- 개인 및 기업체 등 사회단체로 볼수 없는 경우
- 2015년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체
- 기타 타당성 검증이 어렵거나 보조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

## □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

- 지원대상 : 사업비 지원
- 대상단체 : 성북구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요건 (회원, 회칙,

자체 결산서류)을 갖춘 단체
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고 자부담 30% 이상 원칙
  -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  -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
  - 구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
- 지원범위
  - 사업의 공익성, 파급의 효과, 경제성, 자부담율을 고려하여 타부분 예산으로 지원받지 않는 사업
  - 단체 및 사업규모, 자부담액, 전년도 지원액, 지원사업의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지원
  -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총사업비의 70%이내 지원
  - ※ 단,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, 구에서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가 지원결정 한 경우 등은 제외

## Ⅲ 세부추진계획

### 1 지방보조사업 공모 진행

#### □ 신청접수

- 신청기간 : 2016. 2. 15.(월) ~ 2016. 2. 19.(금)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근무시간내 2016. 2. 19. 18:00 까지)
- 기존 지원단체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- 신규단체 : 방문접수
- 신청장소 :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
-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/ 우) 02848

○ 제출서류

- ① 2016년도 보조금집행 관련 서식 (신청서 및 사업계획서)
- ② 임원 및 회원명단 (보조금 집행관련 서식에 포함되어 있음)
  - ※ 성북구민 50인이상, 2015. 12. 31. 기준
- ③ 단체정관 또는 규약
- ④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을 수록한 파일 (어른신복지과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)
  - ※ 신청서식은 성북구청 어른신복지과 배부 및 성북구 인터넷 홈페이지([www.seongbuk.go.kr](http://www.seongbuk.go.kr)) 고시 공고란 게시

**2 사업신청서 등 접수 및 검토**

□ 접수서류

-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

□ 검토사항

- 신청사업 및 사업자 적격여부
  -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
  -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
- 사업계획서 적정성
  -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,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
  - 자기자금 부담 능력 유무, 금액산정의 착오유무

**3 지방보조사업 심의 및 선정**

□ 지방보조사업 심의

- 심의주관 : 성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
-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 : (연 4회 - 3월, 5월, 6월, 10월)

□ 보조사업자 선정

- 사업부서 실무검토 → 위원회심의 → 사업자 선정

**4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**

□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(보조사업자 → 사업부서)

-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 제출
- 대상사업 여부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

□ 지방보조금 교부 (사업부서 → 보조사업자)

-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
-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정당한 채주에게 입금

**5 지방보조사업 수행**

□ 지방보조금 집행

-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
- 지방보조금 전용통장(계좌)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
  - ※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, 비법인인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이 함께 들어가 개설
-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
- 각종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
- 지방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불가
-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
- 자부담 비용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후 반환
-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화

## 6 지방보조금 정산

-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(보조사업자 → 사업부서)
  - 제출시기 : 사업완료시, 사업폐지승인시, 회계연도가 끝났을때
  - 제출서류 : 보조금 실적보고서,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,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, 보조금 전용통장(거래내역포함) 사본, 공사 대장 관련서류,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
- 정산결과 확정통보 (사업부서 → 보조사업자)
  -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가 판단될 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하고,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,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

## 7 지방보조금 성과평가

- 평가시기 :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 (매년)
- 평가주체 : 사업부서
- 평가대상 : 2016년 교부된 지방보조금 사업

## IV 행정사항

- 지방보조사업 공모 진행
  - 구정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(2016. 02. 12. ~ 2016. 02. 19.)
  -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접수 (2016. 02. 12.~ 2016. 02. 19.)
-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
- 보조금 교부 및 정산서 검토
-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. 끝.